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민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9.

발의자 : 유민봉 · 강석호 · 조훈현

김승희 · 서청원 · 장석춘

박인숙 · 이현재 · 송희경

이종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상 도시공원에 포함됨.

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.2%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공원관리청에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9조의3(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